

사건번호
중앙환조 17-3-196 (17.11.2.)

심사관	사무국장	위원장	보 고

심 사 보 고 서

(서울 00구 건물공사장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)

2018. 3. 30.

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

목 차

1. 사건의 개요	1
가. 분쟁의 당사자	
나. 분쟁의 경과	
2. 당사자 주장	2
가. 신청인	
나. 피신청인	
3. 사실조사결과	5
가. 분쟁지역 개황	
나. 피신청인 공사현황	
다. 신청인 현황 및 피해신청 내역	
라.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·점검 결과	
4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	7
가. 평가 소음·진동도	
5. 인과관계 검토	8
가.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	
6. 배상수준 검토	8
가. 배상책임	
나. 배상범위	
다. 배상액	
7. 재정(안)	10

1. 사건의 개요

서울 00구 00동 485-00번지 00아파트에 거주하는 000 등 8명이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장의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하여 '16.7.1.부터 재정신청일('17.11.2.)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, 건축주인 000, 000, 시공사인 0000엔지니어링(주)을 상대로 5,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

가. 당사자

1) 신청인

- 000 등 8명(서울 00구 00동 485-00)

2) 피신청인

- 시행자 : 김00, 김00

- 시공사 : 0000엔지니어링 주식회사(서울 00구 00대로 207)

※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별도로 계약되어 공사가 시행되었으나, 신청인은 철거공사업체(00엔지니어링)를 피신청인으로 신청하지 않음

나. 분쟁의 경과

- '16.7.11. :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작
- '16.7.13.~'16.11.10. : 소음·진동, 먼지 등으로 00구청 등에 민원 제기
- '16.12.6. : 이 사건외 동일아파트 거주자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
 - 중앙환조 16-3-173 사건
- '17.7.21. : 재정신청(16-3-173)사건 재정회의 개최
 -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결정(철거 및 신축공사)
- '17.11.2. :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(17-3-196)
 - 중앙환조 16-3-173 사건과 공사장, 피신청인 및 피해건물이 동일함
- '18.3.29. : 재정회의

2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

- '16.7.11.부터 시작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 기존 2층의 단독주택의 철거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았고, 철거공사 시 발생한 소음·진동으로 신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.
- 또한, 철거공사 이후 신청인 건물과 근접하여 진행된 터파기 공사, 골조공사의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많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.
- 이에 대하여 00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고, 피신청인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.
-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나. 피신청인

- '16.7.1.에 신축공사 사업승인을 얻어 철거일('16.7.11.) 5일전부터 건축물 공사착공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고, 철거시작 한 달 전부터 주민들에게 구두로 홍보하였다.
-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이용하여 철거를 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고, 신청인 건물 높이의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여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다.
- 또한, 신축공사 시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에서는 RPP방음벽(3mH×106mL)과 방진망(1m×106mL)을 설치하였고, 골조공사 시에는 RPP방음벽(6mH×27mH)을 신청인 건물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며, 현장내·외 및 주변도로에 대하여 수시로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.
- 따라서 본 공사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.



3. 사실조사 결과

가. 분쟁지역 개황

- 분쟁지역은 서울시 00구 00동 485-00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축물에서 서측으로 1.4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, 동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.

나. 피신청인 공사 현황

1) 공사개요

- 공사명 : 00동 485-00, 25호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
- 시행자 : 김00, 김00
- 시공사 : 0000엔지니어링(신축공사), 0000니어링(철거공사)
- 공사금액 : 신축공사(25억원), 철거공사(2천만원)
- 공사기간 : '16.7.~'17.4.(10개월)
- 공사규모 : 지상 6층(2개동)
- 공사면적 : 대지면적 707.70㎡, 건축면적 397.96㎡, 연면적 1319.86㎡

2)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

-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【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】

공 종	공사기간 (장비투입 공사일수)	주요장비	피신청인
철거공사	'16.7.11.~'16.7.13. (3일)	압쇄기, 덤프트럭 등	000, 000
터파기	'16.8.1.~'16.9.5. (15일)	굴삭기, 덤프트럭 등	000, 000,
골조 및 마감공사	'16.8.11.~'16.12.9. (20일)	펌프카, 레미콘트럭 등	0000엔지니어링

3) 방음·방진시설 설치현황

- (철거공사) 철거공사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나, 소음저감 시설은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(신축공사) 피신청인은 소음,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터파기 시 RPP 방음벽(3mH×106mL) 및 방진막(1mH×106mL), 골조공사 시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RPP방음벽(6mH×27mH)과 건물전면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, 공사장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4) 멸실 건축물 현황

- 철거건물은 00구 00동 485-00에 위치한 연와조 건물로 1975년에 건축된 건물로 연면적 214.971㎡의 1개동(지상2층)으로 조사되었다.



5) 지질조사

-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(BH-1)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2.8m까지, 퇴적층이 13m까지, 풍화토가 14.2m까지, 풍화암이 16.2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.

다. 신청인 현황 및 피해신청 내역

-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00구 00동 485-00번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, 1층은 판매시설, 2~3층은 주거시설용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며, '71.11.2.에 준공되었다.

- 신청인은 000 등 8명이며, 위 아파트 2~3층에 거주하고 있고,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5,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.

라.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·점검 결과

- 관할 00구청에서 5회에 걸쳐 비산먼지에 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고, 공사장의 소음·진동 및 일조권, 생활권 침해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나, 행정처분 없이 종결되었다.

마. 적용기준

- 주거지역으로 소음 65dB(A), 진동 65dB(V)를 적용한다.

4.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

가. 평가 소음·진동도

-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철거, 터파기, 골조공사 공정 등이 완료된 후 신청되었고, 소음·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·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를 산출하였다.
-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, 이격거리, 장비위치, 방음벽 재질(RPP, 3m)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, 방음시설의 효과, 신청인 건물배치,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, 철거 공사 시 최대 74dB(A), 신축 공사 시 최대 79dB(A)로 평가되었으며, 진동도는 철거공사 시 최대 50dB(V), 신축 공사 시 48dB(V)로 평가되었다.

【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】

공종	공사기간 (실제 장비투입일수)	주요장비	장비 이격거리 (m)	평가소음도 [dB(A)]	평가진동도 [dB(V)]
철거공사	'16.7.11.~'16.7.13. (3일)	압쇄기, 덤프트럭 등	5~15	62~74	50이하
터파기공사	'16.8.1.~'16.9.5. (15일)	굴삭기, 덤프트럭 등	5~20	57~79	48이하
골조 및 마감공사	'16.8.11.~'16.12.9. (20일)	펌프카, 레미콘트럭 거푸집 해체 등	5~20	55~74	48이하
공사장 소음·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				65	65

5. 인과관계 검토

가. 소음·진동,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

- (소음)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.
 - 철거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4dB(A), 신축공사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(A)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(A)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됨
- (진동)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 - 철거 및 신축공사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50dB(V)이하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(V)이하로 평가됨
- (먼지)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 -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 살수 실시 및 방진막을 설치·운영하였고,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, 신청인들이 먼지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

6. 배상수준 검토

가. 배상책임

- (철거공사)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 - 피신청인 000, 000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철거공사 실시여부 및 공사 규모,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철거공사중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.
- (신축공사)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및 제44조(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)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- 피신청인 000, 000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실시여부,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,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,
- 피신청인 0000엔지니어링은 시공업체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에 해당된다.

나. 배상범위

- (철거공사) 철거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(A)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000 등 4명에 대해 배상한다.
 -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(A)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(1월이내, 3일)으로 한다.
 -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, 이격거리, 신청인들의 거주기간, 소음피해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25,000원으로 한다.
- (신축공사) 건축물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(A)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000 등 8명에 대해 배상한다.
 -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(A)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(1월~2월이내)으로 한다.
 -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, 이격거리,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05,000원~560,000원으로 한다.

다. 배상액

- 철거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92,000원, 재정수수료 1,4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93,440원이며,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.
- 신축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3,250,000원, 재정수수료 9,73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,259,730원이며,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.

7. 재정(안)

가. 주 문

- 1) 피신청인 000, 000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000 등 4명에게 금 493,440원을 지급하되,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 - 2)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000 등 8명에게 금 3,259,730원을 지급하되,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2)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.

나. 이 유

심사보고서 내용과 동일